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 [기술용역] 입찰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재정관리부 ☎ 063-716-2263, FAX 063-716-9638
- 업무담당자(규격, 사업수행, 기술평가 등): 자산운영부 ☎ 063-716-2244

모든것은, 사람을 생각하라는 KESCO!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13766-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천안아산지사 이전 신사옥 건립 감리용역
- 계약입찰방법: 총액입찰
- 지역제한: 해당없음
- 장/단기계약: 단년도
-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
 -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건축사 공사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릅니다.
 - ※ 「한국전기안전공사 건축사 공사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www.kesco.or.kr) →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알림마당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분담이행방식 허용
- 용역개요
 - 주 공 종: 건축감리
 - 용역내용: 천안아산지사 이전 신사옥 건립 감리
 - 건물규모: 대지면적 3,000㎡(908평), 연면적 2,814㎡(851평)
- 대지위치: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휴대리 8522-11(아산탕정지구 지원6블록)
- 감리기간: 착수일로부터 554일
- 용역금액 282,531,000원 [추정가격: 256,846,364원 + 부가가치세: 25,684,636원]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감리: 100%

1.1 이행실적평가(40점)

- 1) 건축감리용역(건축사법에 의한 건축감리)의 완성실적
 - 단,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참여업체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완성된 용역의 실적만 인정합니다. (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 용역인 경우 전체용역이 완성되어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 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실적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2)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85,615,455원 (추정가격)
- 3)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평가기준 규모 : 256,846,364원 (추정가격)

1.2 기술능력(20점)

- 1)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과 같습니다.
- 2) 기술자 등급계수 : 건설사업관리 건축분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평가)
- 3) 기술자 경력계수 :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무,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공사감독, 설계감독, 공사감리, 설계감리, 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기술자문업무를 수행한 기간
- 4)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 총책임기술자 여부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또는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1.3 경영상태(40점)

1) 경영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조달청에 통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으로 심사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만일,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2012.7.9일 이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에 대하여는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2024년도 연간 기업경영분석결과” M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 38.80%와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168.02%입니다.
- 이 외의 경영상태 평가에 대하여는 ‘[첨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건축사 공사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별지>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릅니다.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용역입니다.

-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구매요구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 및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고입니다.
- 본 사업은 「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사업으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우리공사가 상생결제 약정을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15 10:00
- 개찰일시: 2026/09/15 11:00 이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협상에의한계약, 2단계 경쟁등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pm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입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전자입찰참가등록(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09/14 18:00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모두** 등록한 자

3.1.1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업종코드: 4817]** 로 등록한 업체

3.1.2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업종코드: 1493]**과 **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업종코드: 1494](동시보유)**으로 등록한 업체

※ **허용업종 : 전문소방공사감리업[업종코드: 1492]**

3.1.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 3572]**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업종코드: 1320]**를 등록한 업체

3.1.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전문감리)[업종코드 : 1109]**으로 등록한 업체

※ **허용업종 : 감리업(종합감리)[업종코드: 1108]**

※ 분담이행 허용(반드시 나라장터의 공동수급협정서에 분담내용을 명시)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건축사사무소로 합니다.

－ 담당건축사 및 책임기술자(책임감리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4.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6/09/14 18:00까지

- 제출방법: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입찰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출 서류: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限),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 시) 각 1부.

4) [첨부] ‘건축사법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 양식

※ 적격심사 대상자는 첨부 ‘건축사법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엑셀양식에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한 자기평가접수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그 외 적격심사 심사서류 일체. / 이행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 해당 평가기준 관련 증빙 포함

6)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기술자 보유 증명서 등 업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찰공고일 및 개찰일 기준 각 1식)

- 제출 기한: **적격심사 시 제출**

- 제출 방법: 나라장터 전자문서(적격심사 신청서)

- 기타 사항: 제출 후 반드시 계약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할 서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 서류: 1)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2) [붙임2] 청렴계약서

3) [붙임3]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4) [붙임4] 「상생결재」 이용 약약서

- 기타 사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5조에 따라 전자계약 체결 시 [붙임1~4] 서류를 첨부하여 체결

5.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공지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안내

- 본 입찰은 「상생협력법」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시 **[붙임 4]상생결제 이용 약약서**에 우리공사 협약은행 중 하나를 표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우리 공사 협약은행(IBK기업은행 또는 하나은행 또는 NH농협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생결제제도 사이트(www.winwinpay.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정관리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 보증금),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21조(보증),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 국가계약법

제12조(계약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공사) - 국가계약법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瑕疵補修)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예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 귀속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물품)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제21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EO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용역) -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1조 및 제22조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간(별도 관련 법률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로 본다.

1. 무상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2.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사용방법 및 환경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를 포함한다.)
3.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 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기관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소홀이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경우
 2. 발주기관이 제공한 시스템, 장비, 프로그램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3. 발주기관이 임의로 산출물 등을 변경한 경우
 4.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구축한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 ⑤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상 유지관리 또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복적물을 인수한 직후부터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소프트웨어사업 내용에 유지 관리 또는 재개발이 이미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을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건축사법에 따른 설계 용역은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 한국전기안전공사 건축사 공사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따릅니다.)
 - 낙찰하한율: 88.7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5점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 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9.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한국전기안전공사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입찰담합행위 신고 관련 안내사항
 - ①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 <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
 - ②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ftc.go.kr> / 민원참여 →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기 → 불공정거래신고
 - ③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스) : 입찰담합행위에 가담한 사업자가 가담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 정보통신, 전문소방 등)에 따르며, 관련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2.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기획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기획부(063-716-2720)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신고센터 → 사이버신문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10) 중소·중견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 재정관리부(063-716-2261~3)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http://www.kesco.or.kr> → 고객마당 → 온라인민원 →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청렴계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안전공사가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안전관리 ·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안전공사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안전공사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안전공사가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안전공사와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안전공사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 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안전공사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안전공사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날인 또는 서명)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귀하

「상생결제」 이용 약약서

당 사는 본 ‘ _____ ’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 사는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등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받겠습니다.
- 당 사는 계약 체결 즉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상생결제시스템 협약 은행인 (IBK기업은행 / 하나은행 / NH농협은행)과 사전약정 체결 후 약정서 및 개설 계좌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겠습니다.
- ※ 3개 은행 중 이용할 은행 표시
- 당 사는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협력사 및 하도급 계약 내역 등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사 대표 ○○○ (인)

한국전기안전공사장 귀하

[첨 부] 건축사 공사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심사 항목	평가요소	등 급			
1) 이행 실적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 모에 해당하는 용 역실적 합계	○ 해당용역 평가기준 규모 대비 A : 100% 이상 : 40.0 B : 80% 이상 100% 미만 : 38.0 C : 60% 이상 80% 미만 : 34.0 D : 40% 이상 60% 미만 : 30.0 E : 40% 미만 : 26.0			
2) 기술 능력	해당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 보 유상황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1)경 력 기술자 (14점)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8 이상 2.4 미만	A. 2.4 이상 B. 1.8 이상 2.4 미만 C. 1.2 이상 1.8 미만	A. 1.8 이상 B. 1.2 이상 1.8 미만 C. 0.6 이상 1.2 미만
		(2)일 반 기술자 (6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A. 12인 이상 B. 9인 이상 12인 미만 C. 6인 이상 9인 미만	A. 9인 이상 B. 6인 이상 9인 미만 C. 3인 이상 6인 미만
3) 경영 상태	종합평가	○ 종합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1)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점수			
	(2) 재무평가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frac{\text{자기자본}}{\text{총 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6.0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 5.8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 5.6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 5.4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5.2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 6.0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 5.8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 5.6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 5.4 E. 기준비율의 50% 미만 : 5.2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E. 기준비율의 25% 미만		
계					

*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은 주4)에 따릅니다.

주1) 이행실적 평가 (40점)

가)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규모·양)을 말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

- ①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용역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 용역의 하한 실적(규모·양)을 말한다.
- ②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규모”는 용역의 하한실적으로 입찰공고에 정한 규모·양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 제1항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다) 평가기준 규모

- ① “평가기준 규모”는 용역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준물량(규모·양)을 말한다.
- ② “평가기준 규모”는 현재 발주하는 용역의 규모·양과 동일하게 정하되, 해당용역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용역 규모·양의 70%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상 “규모·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규모·양)와 인정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주2) 기술능력 평가 (20점)

가)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별지 제3호 서식)

- ① 용역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에 따르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 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 ② 별지 제1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기술용역은 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 ㉠ 등급계수 : 특급 1.0, 고급 0.75, 중급 0.5, 초급 0.25
-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 관리능력계수(용역총책임기술자)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 용역총괄책임기술자는 주택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총괄감리원,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 경우 건축사(비상주 포함) 또는 상주 감리원 중 해당 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되거나, 각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책임기술자로 명기된 자에 한하여 인정함.

③ 용역기술자의 등급 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나)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용역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용역별로 산출한 점수에 용역평가비율(평가대상용역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대상용역과 용역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기술자 평가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기술능력 평가

- ① 해당용역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가)”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3) 경영상태 평가 (40점)

가) 점수 = <별지>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그 밖의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지>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4)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가)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다른 법령에 따른 용역을 보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평가대상 업종 이외의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해당 구성원(면허 보완자)을 평가에서 제외한다.

<별지>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공통사항

- 1) 경영상태 평가(배점 40점)는 용역 규모별로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 등급 점수를 각각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평가한다.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 1)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에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의 “기업경영분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발행 자료를 적용할 수 있다.
- 2) 기준비율 적용 업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과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따른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이나 기술용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적용한다.
- 3)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최근에 업종전체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이하 “직전회계연도”라 한다)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경영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하여 조사·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4) 관련협회가 있으나 협회에 경영 상태를 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3)”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며,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별지 제4호 서식 포함)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은 기업진단보고서,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용역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 5)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경영상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업종은 해당업체가 작성한 정기결산서를 공인회계사가 감사보고서 작성절차에 따라 확인한 검토보고서로 평가하고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4)”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 6) 재무비율에 따른 평가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기술용역 업종이 아니거나 다른 기술용역 면허 등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평가한다.
- 7) 직전 회계연도 이후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이나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는 최초결산서(신설업체의 설립 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에 따라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용역의 제출서류는 “4)”의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
- 8)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관련협회에서 확인한 합병 대상

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를 할 때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보며, 이 경우 최초결산서는 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 평가를 할 때 최초결산서로 본다.

- 9) 직전회계연도 이후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따라 분할 합병한 경우에는 “8)”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 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 10)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의 정기결산서와 “7)”에 따른 최초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감사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 포함)를 첨부해야 한다.
- 11)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경우 “10)”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외감법을 적용받지 않는 업체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경영상태 최종 취득점수(가산점이 있는 경우 가산점 적용가산)에서 5/100를, “부적정 의견”이나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10/100을 감점한다.
- 12)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13) 세부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부(-)의 수치 없이 “0”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세부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동시에 “0인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세 부 심 사 항 목	분모가 0인 경우	분자가 0인 경우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배점한도 적용	최저등급 적용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적용	최저등급 적용

다. 신용평가방법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라.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방법(배점 12점)+신용평가방법(배점 28점)]

: 재무비율평가점수와 신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1. 재무비율 평가방법

평가요소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가)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총 자산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6.0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 5.8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 5.6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 5.4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5.2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6.0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 5.4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 4.8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 4.2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3.6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A. 기준비율의 125% 이상 : 6.0 B. 기준비율의 100% 이상 ~ 125% 미만 : 5.8 C.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 5.6 D.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 5.4 E. 기준비율의 50% 미만 : 5.2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 6.0 B. 기준비율의 75% 이상 ~ 100% 미만 : 5.4 C. 기준비율의 50% 이상 ~ 75% 미만 : 4.8 D. 기준비율의 25% 이상 ~ 50% 미만 : 4.2 E. 기준비율의 25% 미만 : 3.6

주 1)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2)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도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라-2. 신용평가방법

신 용 평 가 등 급			평 점 (추정가격 기준)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8.0	28.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8.0	28.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8.0	28.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8.0	28.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7.0	28.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6.0	26.6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25.0	25.2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2.0	21.0

용역기술자 보유증명서

구분	기술 분야	기술자 종류	적용 용역	학력·경력 기술자수	국가기술자 격법에 따른 기술자수					
일	토목	항만과 해안, 도로와 공항, 토목, 토목 시공, 철도, 철도보선,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질과 기초, 건설재료시험, 토목품질시험, 토목구 조, 측량과 지형공간정보 등	해당 공종이 토목분야인 용역 (도로, 교량, 공항, 댐,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 준 설, 상수도, 하수도 등)	()	()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명						
반	건축	건축기계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 실내건축, 건축구조, 건축품 질시험 등	해당 공종이 건축분야인 용역 (청사, 관람집회시설, 전시시 설, 공동주택 등)	()	()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명						
기	기계 · 환경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생산기계, 일반기계, 용접, 대기관리, 수질관 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등	해당 공종이 산업·환경설비분야 인 용역(에너지저장시설, 발전 소, 쓰레기소각로, 폐수·하수중 말처리장 등)	()	()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명						
자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 신호, 원자력발전, 발송배전, 건축전 기설비, 공업계측제어	해당 공종이 전기분야인 용역 (송전, 변전 등)	()	()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명						
	기타 ()	()	()	()	()					
		합 계(학력·경력+자격기술자)		명						
위와 같이 우리 회사의 기술자 보유내용이 신고된 기술자와 같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주1) 기술자 보유증명은 해당 기술분야별로 작성해야 한다.
2) 경력기술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해야 한다.

용역기술자 보유현황표

가. 일반기술자 현황

구 분	회 사 별 보 유 인 원 수						비고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회사	합 계	
일반기술자 (인 원 수)							
경력기술자 (점 수)							

나. 경력기술자 현황

번호	성명	소속	주민등록번호	기술자 등 급	용역명	참여기간	점수	비고
								증명서 첨 부
합 계								

용역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소 속		직 위		공 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참여기간	
기술분야	기술자 종류	기술자등급		용역분야 종사기간	
○ 해당분야 용역참여 실적 * 금액 : 천원					
발 주 자	용 역 명	해당용역 규모·금액	용역금액	참여기간	담당업무
위와 같이 우리 회사 소속직원의 기술자 경력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발급기관명)					

- 주1) 초급기술자 이상 기술자로서 해당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준공금액 5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의 경우에 해당된다.
- 2) 용역규모와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3) 기술자 등급란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학력·경력기술자 등급이나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등급을 기재한다.

